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1. 6. 10. 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(안) 【마포1번가연구단 소관】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- 2021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(안) -

검 토 보 고

1. 안 건 명

- 2021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: 2021년 5월 21일(금)
- 제출자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- 2021년 5월 24일(월)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I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

1 총괄 현황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비 고
합 계	819,890,907	775,898,479	43,992,428	5.67%
일 반 회 계	724,370,549	687,891,186	36,479,363	5.30%
특 별 회 계	95,520,358	88,007,293	7,513,065	8.54%

-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9억 9,242만 8천 원(5.67%)이 증가한 8,198억 9,090만 7천 원임.
 - ▶ 일반회계: 7,243억 7,054만 9천 원(364억 7,936만 3천 원 증가)
 - ▶ 특별회계: 955억 2,035만 8천 원(75억 1,306만 5천 원 증가)

II 일반회계

1 마포1번가연구단 세출예산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률
합 계	1,475,293	1,120,228	355,065	31.70%
마포1번가연구단	1,475,293	1,120,228	355,065	31.70%
	시	503,925	503,925	0
	구	971,368	616,303	355,065

2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현황

(단위: 천 원)

부서명	세 부 사 업 명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을
합 계		355,065	0	355,065	순증
마포1번가 연구 단	사·도비 보조금반환금 (2020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)	355,065	0	355,065	순증

III 검토의견

■ 2021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의

- 일반회계 세출은 14억 7,52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2,022만 8천 원 대비 31.70%에 해당하는 3억 5,506만 5천 원 이 증액되었음.
-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은 사·도비 보조금반환금 총 1건 3억 5,506만 5천 원으로, 이는 “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비”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임.
- 지역사회혁신계획(협치사업) 실행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, 주관부서인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보조금 전액을 교부받은 후 각 사업부서(노인장애인과, 아동청년과, 교통지도과, 여성가족과, 건강증진과 등)에서 간주 처리하여 집행 및 정산함.

- 본 추경편성은 각 부서의 사업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마포1번가연 구단에서 총괄 수합하여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 등을 위한 세출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<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>

별표7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

그룹	편성목	설정 (통계목 포함)	비고
800	예비비및기타		
	802 반환금기타	01. 국고보조금 반환금	
		1.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※ 시·도에서 국고보조 시·군·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·군·구 반환금은 시·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·도에서 반납 조치	
		2.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※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,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'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'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	
		02. 시도비보조금 반환금	
		1. 시·군·자치구가 시·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	
		2.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	

-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